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시	배포	2019.2.27.(수)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요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박진애 사무관 (02-2100-2953)	

제 목 :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

- **취업, 승진, 소득 상승,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(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회신 의무화)**
- **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**

1. 추진배경

- 은행법 개정*(19.6.12일 시행)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

* 은행법 · 보험업법 · 여전법 · 저축은행법 개정(18.12월 공포)
→ 동일한 내용으로 4개법 시행령 개정 예정

- 「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(1.22)」 후속조치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

2. 주요내용

가.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(시행령)

-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, 절차 등을 규정
 - 요건 : 취업, 승진, 소득 상승, 신용등급 상승 (가계대출) / 신용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 (기업대출)
 - 절차 : 금리인하 요구 후 10 영업일 이내(자료 보완기간 제외)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, SM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

나.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(시행령)

□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을 규정

- 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
- ②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

※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(민병두, 김관영, 김종희 의원안)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

다.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(시행령, 감독규정)

□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 도입(감독규정)

-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(정례회)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

* 금투업('18.8.31일), 지주회사('19.1.31)에 既도입

□ 인가요건 정비(시행령, 감독규정)

-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(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)을 통일적으로 정비*하고,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**

* 예 :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
→ “최근 5년간 요건” 삭제

** 예 :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

3. 향후일정

□ 규제위, 법제처 심사를 거쳐 '19.6.12일 시행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